

2014년 4월 30일

대한민국 산업통산자원부 특허청 귀중

일반사단법인 일본지적재산협회  
아시아전략프로젝트  
상무이사 벳쇼 히로카즈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 보호에 관한 의견

귀청 일익 번영함을 기원합니다.

저희 일본지적재산협회는 1938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간 유저 단체로서, 일본의 주요 기업 약 900 개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지적 재산 제도, 그 운용의 개선에 대하여 의견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 보호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기와 같이 저희 의견을 정리하였으므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하는 의견의 배경, 이유 등에 대하여 기꺼이 설명드리겠사오니, 필요하시다면 사양 말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 하기 —

당협회는 특허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클레임을 인정하는 것에 찬동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록 매체에 저장되어 있거나/없거나에 관계없이, 인간의 지적 활동에 의해 생겨난 기술 성과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유체물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성립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귀국 특허법에 의하면, 기억 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에 있어서의 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 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에 의해, 이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①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인스톨함으로써 실행 가능하고, 유저가 컴퓨터에 인스톨했을 때, 혹은 인스톨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에 비로서 특허권이 실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사람은, 기억 매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억시키지 않기 때문에, 침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한편, 유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특허권 침해는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는 침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은, 특히 최근의 급속한 네트워크 사회의 발전에 의해 그 영향이 현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에는 자기 디스크나 광디스크에 의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에 의한 제공, 즉 유체물로서의 제공이 아니라, 지적 생산물인 전자 정보로서의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휴대 전화나 태블릿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유저가 기호에 따라서 인스톨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생산(복제)이 극히 용이하다는 점으로부터도, 그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보호의 대상임을 특허법으로 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특허법의 정의에 있어서, 「실시」 중에 「전기 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등, 송수신이나 다운로드를 의식한 실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는 것도 더불어 검토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문의처 :

일반사단법인 일본지적재산협회

사무국장 니시오 노부히코

TEL : 81-3-5205-3433

FAX : 81-3-5205-3391

Email : nishio@jipa.or.jp

